

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

1. 지 정 번 호:

2. 운영기관명:

3. 감 시 단 명:
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조제3항 및 제48조에 따라 귀 기관을 청소년 유해환경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·고발활동과 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